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공모 안내(온라인몰, 앱)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가계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온라인몰, 앱)	○ 지원내역 : 개인 소비자 대상 국산 농축산물 할인금액(보조 100%) - 할인대상 : 할인한도 관리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나 할인대상을 특정(유료회원 등)하여 추진할 수 없고, 특정 결제수단을 요구할 수 없음 - 할인율 : 할인품목 소비자 구매액의 20~30% 할인 * 대형 및 중소형 온라인몰 20%, 전통시장 온라인몰(앱) 30% - 할인한도 : 행사주기별(일주일) 1인 1~2만원, 중복할인 제한 * 대형 및 중소형 온라인몰 1만원, 전통시장 온라인몰(앱) 2만원 * 명절 등 특별행사 기간에는 할인율, 할인금액 등이 상향될 수 있음 - 할인품목 : 국산 신선 농축산물 등 농식품부 지정품목 * 수산물, 수입 농축산물 불가 ○ 행사기간 : 사업자 선정 완료 후 ‘24년 11월까지

* 상기내용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대상(자격)

신청구분	자격조건
공통	소비자가 할인품목 결제 시 자동할인, 특정 품목(국산 농축산물 중 지정품목)에 할인 설정, 할인율/할인금액/할인한도 등 행사방침에 따라 전산시스템 변경 가능, 중복할인 제한, 모든 결제수단(현금, 카드, 상품권 등)에 할인적용, 물/앱 내 전용관 운영 및 메인창 배너 게시 가능, 할인내역 표시 가능, 수혜소비자 구분이 없는 업체(유·무료회원간 차별 등 불가), 계열사는 1개 대표업체에서 타 계열사 포함하여 참여 신청하며 대표업체에서 사업관리 필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실적취합·성과분석·정산 등 필요 시 각종 자료 제출협조 가능
대형 온라인몰	기업형태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온라인몰 운영사 *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자체할인행사 실시, 자체할인행사 및 홍보비용은 자부담
중소형 온라인몰	기업형태가 중견·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온라인몰 운영사 혹은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외부몰 연계 지원사업 추진 불가)
전통시장 온라인몰(앱)	전통시장 상품을 판매·배달하는 앱 운영사 혹은 온라인몰(B2C만 해당)

3. 사업신청

- 접수방법 : 신청양식 작성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 aT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대표메일 sale@at.or.kr

- 접수 시 메일 제목에 전통시장온라인몰, 중소형 온라인몰 등 **업체 및 업체명** 명시 필수
* 예시) [중소형온라인몰/00몰]2024년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지원
- 제출서류 : 공문, 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 제반서류
* 제안서 양식은 자율이나 제안서 내 필수 포함사항 별도 확인
- 접수기간 : '23.12.18(월) 18:00까지 * 접수인정은 '23.12.18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평가 및 선정

- 자격심사 통과 업체 대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면평가 통해 평균 70점 이상 시 선정

5. 추진일정

- 신청접수(12.18) → 자격심사 → 제안서평가(12월중하순) →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12월말) → 사업결과보고('25년)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사업기간 사업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의 전체 거래실적(최근년도 실적 포함) 및 부류별(ex.청과 등), 품목 할인지원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해 필히 자료를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사업취소 및 미정산 될 수 있음)
-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보조사업자(예치형) 등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세금계산서 발행 없음)
* aT 및 aT 선정 정산업체에 정산 자료 및 증빙 등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 검증받은 후 제출, 10억원 이상일 경우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아래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발생이자 포함)하고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함
 -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을 중도포기 하는 경우
 - 모니터링 결과 할인행사 미준수 시(aT 등에서 수시 및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정부정책 변경 등 기타 상황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 판단 시
- 행사 실적 등 증빙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추후 aT 등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며, 환불 내역은 할인지원금로 불인정하며 환수조치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aT 공공식품지원부(02-6300-1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